

##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영규\* · 김종일\*\*

### <요 약>

본 연구는 정부가 일반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2016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무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매년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경영공시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2016년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270개이다.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결과 일자리지원금은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하였다. 전문인력지원금과 사업개발비지원금의 경우는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 정부지원 종류 중 일자리지원금과 사회보험료지원금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정부지원금의 지원형태에 따라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주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제공 받는 정부지원금 중 일자리지원금과 사회보험료지원금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원을 위한 향후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이 제공받는 정부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정부지원금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이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에 그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재무성과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석사, kyu8209@naver.com, 주저자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jayk@catholic.ac.kr, 교신저자

## I. 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평가되는 일이다. 급격한 성장은 소득의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환경문제, 지역문제 등을 야기 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 평균예상 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과 해고가 유연해진 기업은 더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고, 신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아 일자리가 필요한 청·장년 계층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 총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매년 감소해 30년 뒤에는 우리나라 도시 80개 지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정부는 정책적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환경, 투입 재정 등의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다르게 영국,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어오며 국가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고민해 왔으며, 국가차원의 문제해결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영역의 민간주도적인 활동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대안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다. 기존 비영리기관과 일반영리기관의 중간형태의 조직이며, 민간주도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을 가진다. 우리나라 정부는 앞선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2007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기업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606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지원금에 대한 효과성의 분석은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운영현황,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걸쳐 진행되었다. 김순양(2008), 이승규·라준영(2010)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 측정 지표 개발을 시도하였다. 박선화(2009)는 사회적기업의 운영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운영 및 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김재홍·이재기(2012)는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이 고용창출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외 설문조사, 사례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일부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초기의 기업 운영성과 현황과 정부지원금을 통해 발생한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 및 적용의 시도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받게 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측정에 대한 노력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에 향후 진행될 연구에 방향을 제시해준 공헌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정부가 일반기업에게 제공하는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재무성과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비해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일반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성과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제공받는 정부지원금과 재무적성과의 연계성 확인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한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부 지원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예상효과 확인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념,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등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제Ⅲ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제시하며, 제Ⅳ장에서는 자료수집 및 변수설정, 연구모형 설정 등 연구방법을 살펴본다. 이후 제Ⅴ장에서는 연구모형에 따른 정부지원금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Ⅵ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한다.

## Ⅱ.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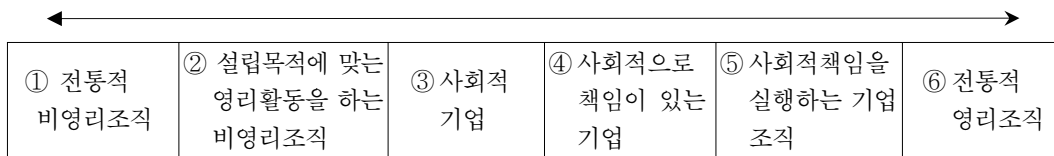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수익 창출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공익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의 시작은 19세기 영국 노동자협동조합에서 그 시작을(Cornelius et al., 2008)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최근까지 이어져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반에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득의 양극화와 높아지는 실업률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했다. 사회적기업은 이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관심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도입의 시작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 1월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해 7월 1일부터 육성법은 시행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첫해 55개소의 사회적기업이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수익 창출을 통해 기업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일반 영리기업의 특징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조직의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영리추구를 우선의 목표로 추구하는 전통적인 영리 기업의 경우는 오른쪽 끝(⑥)에 위치하며, 사회적 인 문제 해결을 우선의 목표로 추구하는 조직인 전통적 비영리단체는 왼쪽 끝(①)에 위치한다. 사회적기업은 전통적 비영리단체와 기업의 중간형태의 특성을 나타내는 (③)에 위치한다.

〈그림 1〉 혼합모형의 범위



출처 : Alter, K. (2007 : 14). Social enterprise typology

## 2.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7년 55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501개소, 2013년에는 1,012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으며, 2016년 9월 기준 총 1,606개소가 활동 중이다. 2014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사회적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12년 885백만원, 2013년 1,172백만원, 2014년 1,203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기업 중 11.2%(137개소)의 사회적기업이 1억원 미만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중 27.6%(336개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사회적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중 36%(438개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간 매출이 50억원 이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사회적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중 3.4%(41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평균 및 분포현황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은 일반기업에 비해 아직 미진한 수준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성 증가를 통한 매출액 향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에 대한 우려는 영업손실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사회적기업의 기업당 평균 연간 영업이익은 2014년 -9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금액은 2012년 -122백만원에서 2013년 -114백만원으로 감소하고 2014년 -92백만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실적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영업손실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무상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의 조직 특성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영세한 기업규모로 인해 이윤을 발생시키기까지 매출 향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를 연계·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성 측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요건에 대해 검토 및 심사를 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업무 매뉴얼 2015). 인증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경영 등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의 기반을 조성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인증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세제지원, 경영 및 판로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넷째,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업무 매뉴얼 2015).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8조에 따라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인증 받은 기관에 한하여 사회적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명시된 7가지 항목(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④ 사회적목적실현 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⑥ 정관 ⑦ 이윤의 재투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요건의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는 매년 초 고용노동부의 인증계획공고로 시작되며, 연간 상시 접수로 진행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각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통해 사전 상담과 인증심사 서류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통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접수된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권역별 지원기관과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인증심사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육성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인증요건 충족여부 및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에 대한 적합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이후 최종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표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구 분                  | 인증요건                                                                                  | 근 거                               |
|----------------------|---------------------------------------------------------------------------------------|-----------------------------------|
|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
| ②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
|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
| ⑥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
|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 · 합자조합일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지원제도는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간접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지원을 통해서는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거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서는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등의 경영능력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간접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는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운영, 경영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표 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현황

| 지원제도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                 |                               |                                                                                                                                                                                                                                                                                                                                                                                                                                                                | 예비   | 인증 |
| 공공기관<br>우선구매 권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li> <li>* 대상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li> </ul>                                                                                                                                                                                                                                                                                                                                             | —    | ○  |
| 세제지원<br>제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16년말까지 인증)의 법인·소득세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li> <li>•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소득공제 (법인 10%, 개인 30%)</li> <li>• 사회적기업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면허세 50%, 재산세 25%감면</li> </ul>                                                                                                                                                                                                                                                     | —    | ○  |
| 사회보험료<br>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4년간, 1인당 117천원, 50명 한도)</li> <li>* 사회적기업 중 인건비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li> </ul>                                                                                                                                                                                                                                                                                                                          | —    | ○  |
| 경영<br>지원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li> <li>•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컨설팅 : 연간 3.3백만원</li> <li>— 전문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연간 2천만원, 5년간 총 5천만원 한도</li> <li>• (예비사회적기업) 3년간 총 5백만원 한도</li> </ul> </li> </ul> </li> </ul>                                                    | ○    | ○  |
| 재정<br>지원        | 전문<br>인력<br>채용<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li> <li>• 3년간 인당 월 200만원 한도(사회적기업 3명, 예비 1명, 고령 전문인력 1명, 수혜기관에 자부담 부과)</li> <li>* 자부담률 :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li> </ul>                                                                                                                                                                                                                             | ○    | ○  |
|                 | 사회적<br>기업<br>일자리<br>인건비<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li> <li>• (인증)*16년 1인당 월 826천원(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 고용시)</li> </ul> </li> <li>• (예비)*16년 1인당 월 964천원(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li> </ul> </li> <li>*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li> </ul> | ○    | ○  |
| 사업<br>개발비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amp;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li> <li>*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li> </ul>                                                                                                                                                                                                                                                                                                            | ○    | ○  |
| 모태펀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자펀드)을 결성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투자운용사)</li> </ul>                                                                                                                                                                                                                                                                                                                                       | ○    | ○  |

자료 :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매뉴얼(20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I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 1. 선행연구 검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도되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초기에 적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와 정보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승규·라준영(2010)은 사회적 투자를 기업회계와 동일한 개념으로 정립하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가치측정 지표(사회투자수익률,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를 개발하여 이를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곽선화(2009)는 사회적기업의 운영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인증현황, 인증기준 적합성,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김재홍·이재기(2012)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성과측정을 위한 사업보고서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지원금의 고용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지원금이 대부분 취약계층 인건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자립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외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자체재원으로 고용하는 자체고용 근로자수에는 정부지원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치측정 지표(SROI)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측정을 시도한 이승규·라준영(2010)의 연구는 일반 기업회계와 동일한 개념구조를 갖는 사회경제적 가치측정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큰 공헌점이 있었으나, 사회경제적 가치측정지표를 일부 기업에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표본기업이 한정되어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사회적기업 성과를 분석한 곽선화(2009)의 연구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보여주었으나, 분석내용은 2007년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용창출 및 재무성과의 분야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김재홍·이재기(2012)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과 고용창출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용부를 통해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금이 차지하는 유급근로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만형·양광석(2015)는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자료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통한 고용창출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근로자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증유형은 일자리창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증가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의미있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김보라

(2015)는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지원금 의존 성향과 재무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는 것을 확인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적기업 성과에 대해 측정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을 위한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많은 연구 활동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다르게 일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을 통해 정부지원과 경영성과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신상훈 외(2008)은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대상 보증지원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김성환 외(2010)은 정부보조금이 중국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현금보조금 지원이 기업의 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했다.

강경이 · 이상원(2009)은 회생절차를 종결한 기업의 회계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이 회생절차 이전과 이후 회계 성과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강경이 · 이상원(2009)은 기업이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률(매출액/총자산)을 지속가능한 성장성 평가 지표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회생절차 이후 총자산회전률은 감소하는 반면, 총자산회전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존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경옥 · 손희정 · 오웅락(2018)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가 정부지원금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부채비율과 정부지원금비율이 높을수록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규모와 인증유형의 차이가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성과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모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은 낮아지고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2016년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원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가설

사회적기업은 이윤 추구의 목적보다 사회적인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 기업이다. 때문에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 인증 이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이후 일자리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사업개발비지원금, 사회보험료지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인증 이후 초기 경영활동에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김성환 외(2010)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실제로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지원금의 형태를 현금보조금과 세금보조금으로 분류하여 각 지원금별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충분히 통제할 장치가 없다면,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부의 현금보조금지원과 세금면제를 통한 지원이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어떠한 효과성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부지원금 내역을 통해 각 지원금별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초기 정착을 위해 지원 받는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당해연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을 통해 당해연도에 일자리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사업개발비지원금, 사회보험료지원금 중 한번이라도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자한다.

사회적기업이 받는 지원금의 효과성은 지원금을 수혜받는 당해연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연도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전년도에 정부지원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재무성과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2]를 설정한다.

[가설 2] 직전년도 사회적기업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은 재무성과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를 바탕으로 전년도 수혜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기업의 재무성과 확인을 통해 당해연도에 나타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나타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의 효과성의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원금은 각 유형별로 다른 형태로 활용 된다. 일자리지원금은 취약계층 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전문인력지원금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지원금은 기술개발, 홍보 등의 목적의 비용을 지원하며, 사회보험료지원금은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듯 각각의 사회적기업의 지원금은 사업 목적 및 사용 방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유형별 지원금이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각 유형별 지원금의 형태에 따른 재무성과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원형태에 따라 재무성과에 다른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을 통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형태별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정부지원의 세부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IV.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및 변수설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매년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경영공시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기업의 운영현황, 사회적목적 실현 활동, 재무현황 등의 자료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의 활동들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270개소이며, 해당 참여기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한다. 분석대상 기업의 표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1. 3개년('13~'15년) 주요 재무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업
2. 3개년('13~'15년) 고용인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업
3. 주요 재무현황의 연간 비교가 가능한 기업

본 연구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의 재정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운영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추구하는 특성 때문에 재무성과를 측정 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수익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일반기업이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것과 다르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고용, 사회서비스제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의 영

업활동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회적기업의 평균 영업손실 내용으로도 그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의 목적은 영업이익의 창출보다 사회적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인증 이후 초기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강경이·이상원(2009)은 회생절차를 종결한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 평가를 총자산회전률(매출액/총자산)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는 총자산회전률은 기업이 자산의 활용한 매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냈는가를 확인하는 활동성 지표이며, 총자산회전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존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노력은 매출활성화를 통한 영업규모 확대이다. 이에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선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의 목적을 따라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의 사례를 따라 활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총자산회전률(매출액/자산)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과 수령하지 않은 기업간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로 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과 수령하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구성( $G\_D$ )하였다. 정부지원금 수령 여부는 초기 활동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사업개발비지원금, 사회보험료지원금으로 구분한다. 해당년도에 네가지 지원금 중 한가지라도 수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구분한다.

전년도의 정부지원금 수령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과 수령하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구성( $G\_D\_before$ )하였다. 해당년도의 전년에 네가지 정부지원금 중 한가지라도 수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구분한다.

김성환 외(2010)은 정부보조금 형태에 따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지원 보조금별 지원금액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이후 경영공시 참여를 통해 공개된 정부지원금 수령기업 대상으로 각 유형별 지원내역을 구분하여 일자리지원유형( $\ln G\_P$ ), 전문인력지원유형( $\ln G\_S$ ), 사업개발비지원유형( $\ln G\_R$ ), 사회보험료지원유형( $\ln G\_I$ )로 각 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 분석하여 각 유형별 지원금 수령 기업의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통제변수는 김성환 외(2010)은 정부보조금 형태에 따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활용한 지표를 바탕으로 기업규모( $\ln Asset$ ), 기업연령( $Age$ ), 유동비율( $current$ )을 설정하였다. 총 고용인원( $Man$ ) 변수는 정부지원금 의존 성향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김보라(2015)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 $\ln Asset$ )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양(+)관계(Flath and Knoeber 1980)와 음(-)관계(Alexeev and Kim 2008)가 모두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설정한 변수는 기업연

령(Age)이다. 기업연령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선행연구(Alexeev and Kim 2008)에 따르면 음(-)의 관계가 예상될 수 있지만 업계에서의 누적된 경험과 노련한 협상력으로 인해 양(+)의 관계도 예상된다. 또한 유동비율(current)은 기업이 제출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반영하며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양(+)의 관계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계원·최동열 2004).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총 고용인원(Man)을 통제변수로 활용하며 선행연구(김보라 2015)에 따르면 음(-)의 관계를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인원수 증가에 따른 활발한 활동성으로 인해 양(+)의 관계도 예상할 수 있다.

## 2. 연구모형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 수령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위한 가설 1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독립변수로는 당해연도 정부지원 경험의 유무를 더비변수(G\_D)로 설정하고 정부지원의 경험이 있는 경우 1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설정했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의 해당연도 유동비율, 총자산, 기업연령, 고용인원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기업의 매출액을 자산으로 나눈 총자산회전률로 설정하였다.

$$SeSTA = \beta_0 + \beta_1 G\_D + \beta_2 \ln Asset + \beta_3 Age + \beta_4 Current + \beta_5 Man + \epsilon$$

SeSTA = 총자산회전률(매출총액/총자산)

G\_D : 당해연도 정부지원 유무(수령시 1, 미수령시 0)

lnAsset : 총자산 로그값

Age : 기업운영기간

Curren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Man : 고용인원

가설 2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분석 대상 중 직전연도에 지원금 수령 경험 유무를 더비변수(G\_D\_before)로 설정하고 전년도 정부지원의 경험이 있는 경우 1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설정했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의 해당연도 유동비율, 총자산, 기업연령, 고용인원을 설정하였다.

$$SeSTA = \beta_0 + \beta_1 G\_D\_before + \beta_2 \ln Asset + \beta_3 Age + \beta_4 Current + \beta_5 Man + \epsilon$$

SeSTA = 총자산회전률(매출총액/총자산)

G\_D\_before : 직전연도 정부지원 수령 여부(수령 시 1, 미수령시 0)

lnAsset : 총자산 로그값

Age : 기업운영기간

Curren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Man : 고용인원

가설 3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분석 대상 중 각 유형별로 지원금 수령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일자리지원 관련 정부 지원 수령기업의 재무성과 분석을 위해 일자리지원금( $\ln G\_P$ )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의 해당연도 유동비율, 총자산, 기업연령, 고용인원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기업의 매출액을 자산으로 나눈 총자산회전률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SeSTA = \beta_0 + \beta_1 \ln G\_P + \beta_2 \ln Asset + \beta_3 Age + \beta_4 Current + \beta_5 Man + \epsilon$$

SeSTA = 총자산회전률(매출총액/총자산)  
 $\ln G\_P$  : 일자리 지원금 수령금액 로그값  
 $\ln Asset$  : 총자산 로그값  
 Age : 기업운영기간  
 Curren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Man : 고용인원

전문인력지원 관련 정부 지원 수령기업의 재무성과 분석을 위해서 전문인력지원금( $\ln G\_S$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설정은 이전 모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SeSTA = \beta_0 + \beta_1 \ln G\_S + \beta_2 \ln Asset + \beta_3 Age + \beta_4 Current + \beta_5 Man + \epsilon$$

SeSTA = 총자산회전률(매출총액/총자산)  
 $\ln G\_S$  : 전문인력 지원금 수령금액 로그값  
 $\ln Asset$  : 총자산 로그값  
 Age : 기업운영기간  
 Curren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Man : 고용인원

사업개발비 관련 정부 지원 수령기업의 재무성과 분석을 위해서 사업개발비지원금( $\ln G\_R$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설정은 이전 모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SeSTA = \beta_0 + \beta_1 \ln G\_R + \beta_2 \ln Asset + \beta_3 Age + \beta_4 Current + \beta_5 Man + \epsilon$$

SeSTA = 총자산회전률(매출총액/총자산)  
 $\ln G\_R$  : 사업개발비 지원금 수령금액 로그값  
 $\ln Asset$  : 총자산 로그값  
 Age : 기업운영기간  
 Curren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Man : 고용인원

사회보험료 관련 정부 지원 수령기업의 재무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지원금(lnG\_I)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설정은 이전 모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SeSTA = \beta_0 + \beta_1 \ln G\_I + \beta_2 \ln Asset + \beta_3 Age + \beta_4 Current + \beta_5 Man + \epsilon$$

SeSTA = 총자산회전률(매출총액/총자산)

lnG\_I :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금액 로그값

lnAsset : 총자산 로그값

Age : 기업운영기간

Curren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Man : 고용인원

## V. 분석결과

###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분석은 아래 <표 3>과 같다. 종속변수인 총자산회전률(SeSTA)의 평균은 2.620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부지원(G\_D) 경험 유무 더비변수의 평균은 0.89, 직전년도 정부지원(G\_D\_before) 더비변수의 평균은 0.88으로 나타났으며, 각유형별 지원금의 평균은 일자리지원금(lnG\_P)이 10.785, 전문인력지원금(lnG\_S)이 9.650, 사업개발비지원금(lnG\_R)이 10.009, 사업개발비지원금(lnG\_I)이 9.467로 나타났다.

<표 3> 기초통계량 분석

| 구 분        | n   | 평 균    | 표준 편차  |
|------------|-----|--------|--------|
| SeSTA      | 300 | 2.620  | 1.766  |
| G_D        | 300 | 0.89   | 0.309  |
| G_D_before | 300 | 0.88   | 0.326  |
| lnG_P      | 194 | 10.785 | 0.818  |
| lnG_S      | 143 | 9.650  | 0.802  |
| lnG_R      | 162 | 10.009 | 0.831  |
| lnG_I      | 124 | 9.467  | 1.345  |
| lnAsset    | 300 | 12.892 | 1.310  |
| Age        | 300 | 6.223  | 4.431  |
| Current    | 300 | 3.172  | 4.502  |
| Man        | 300 | 40.913 | 73.978 |

아래 <표 4>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분류된 자율경영공시 참여 기업 중 정부지원금의 수령 경험이 있는 기업은 268개소이며 전체 300개 기업 대비 89.3%의 비중을 나타냈다. 정부지원금의 수령 경험이 없는 기업은 32개소이며, 10.7%의 비중을 나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 수령경험이 없는 기업이 나타난 것은 세 가지 사유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이다. 사회적기업은 인증 이후 최대 5년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때문에 인증 이후 지원기간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율경영공시 참여 시 정부지원금 수령 내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을 신청 시 심사요건을 미충족 한 경우이다.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은 각 지자체를 통해 공모절차를 거친다. 각 지자체는 지원제도 참여 희망 기관 모집 이후 선정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사업 참여대상기업 선정 심사 시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금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령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 선택에 의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 수혜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때문에 정부지원금에 의존하여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수 있다.

<표 4> 정부지원금 수령 경험 기업 현황

| 구 분   | 정부지원금 수령 경험이 있는 기업 | 정부지원금 수령 경험이 없는 기업 | 총계  |
|-------|--------------------|--------------------|-----|
| 기업 수  | 268                | 32                 | 300 |
| 비중(%) | 89.3               | 10.7               | 100 |

아래 <표 5>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중 유형별로 일자리지원금을 수령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194개소, 전문인력지원금을 수령받은 기업이 있는 기업은 143개소, 사업개발비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는 기업은 162개소, 사회보험료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는 기업은 124개소로 확인됐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수령 내용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유형별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중심적인 사업분야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5> 각 유형별 정부지원금 수령 기업 현황

| 구 분     | 유형별 정부지원 내용 |        |         |         |
|---------|-------------|--------|---------|---------|
|         | 일자리지원       | 전문인력지원 | 사업개발비지원 | 사회보험료지원 |
| 수령 기업 수 | 194         | 143    | 162     | 124     |

## 2. 정부지원금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대상 기업 중 사회적기업 관련 정부 지원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적이 있는 기업과 수령 경험이 없는 기업을 더미변수(G\_D)로 구분하였다.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을 한번이라도 수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는 1, 아닌 경우는 0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산, 기업연령, 총 고용자수, 유동비율의 통제변수와 함께 분석하였다. 아래 <표 6>의 분석결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의 경우 상관계수가 -0.135를 나타내었으나 종속변수인 총자산회전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가설 1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을 전년도에 받은 기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년도 전해에 정부지원금의 수령 경험이 있는 기업(G\_D\_before)의 경우는 1, 아닌 경우는 0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산, 기업연령, 총고용자수, 유동비율의 통제변수와 함께 분석하였다. 아래 <표 6>의 분석결과 전년도 수령 유무는 총자산회전률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가설 2는 채택되지 않았다.

<표 6> 정부지원금 수령기업 및 전년도 정부지원금 수령기업 분석결과

| 종속변수 : SeSTA<br>(총자산회전률) | G_D             |         | G_D_before      |         |
|--------------------------|-----------------|---------|-----------------|---------|
|                          | 회귀계수( $\beta$ ) | t값      | 회귀계수( $\beta$ ) | t값      |
| 관심변수                     | -0.135          | -0.488  | -0.274          | -1.035  |
| LnAsset                  | -0.868***       | -11.014 | -0.878***       | -11.207 |
| Age                      | 0.003           | 0.172   | 0.003           | 0.135   |
| Current                  | -0.035*         | -1.823  | -0.033*         | -1.716  |
| Man                      | 0.008***        | 5.944   | 0.008***        | 5.847   |
| Adj R <sup>2</sup>       | 0.323           |         | 0.325           |         |
| Prob>F                   | 29.488***       |         | 29.738***       |         |

G\_D : 정부지원 수령 여부(수령 시 1, 미수령시 0)

G\_D\_before : 전년도 정부지원 수령 여부(수령 시 1, 미수령시 0)

ln Asset : 총자산의 로그값

Age : 기업운영기간

Curren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Man : 고용인원

\*\*\*는 1%, \*\*는 5%, \*는 10% 수준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3. 정부지원금 유형별 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의 각 유형별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지원금 유형별로 수령 받은 금액의 로그값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자산, 기업연령, 총고용자수, 유동비율의 통제변수와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원금별 수령 경험에 있는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해 일자리지원금과 사회보험료지원금에 대해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 7>과 같이 일자리지원금(ln G\_P)을 수령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의 분석결과 일자리지원금은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보이며 상관계수는 0.31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자리 지원금의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일자리 정부지원금(lnG\_P) 수령 기업 및 전문인력 정부지원금(lnG\_S) 수령 기업의 분석 결과

| 종속변수<br>SeSTA(총자산회전률) | ln_G_P          |        | ln_G_S          |        |
|-----------------------|-----------------|--------|-----------------|--------|
|                       | 회귀계수( $\beta$ ) | t값     | 회귀계수( $\beta$ ) | t값     |
| 관심변수                  | 0.315**         | 2.253  | 0.150           | 0.915  |
| LnAsset               | -0.925***       | -8.601 | -0.824***       | -6.702 |
| Age                   | 0.073*          | 1.880  | 0.010           | 0.373  |
| Current               | -0.033          | -1.179 | -0.015          | -0.605 |
| Man                   | 0.013***        | 5.915  | 0.006***        | 3.004  |
| Adj R <sup>2</sup>    | 0.327           |        | 0.243           |        |
| Prob>F                | 19.782***       |        | 10.111***       |        |

lnG\_P : 일자리 지원금 수령금액의 로그값

ln G\_S : 전문인력 지원금 수령금액의 로그값

LnAsset : 총자산의 로그값

Age : 기업운영기간

Curren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Man : 고용인원

\*\*\*는 1%, \*\*는 5%, \*는 10% 수준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일자리지원금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본 연구의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까지 노동력에 따라 영업규모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 분야의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서 그 이유를 예상할 수 있다. 일자리지원금 수령에 따라 인력채용 등에 따른 근로자 증가를 이루고, 사회적기업은 늘어난 근로자를 통해 매출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고용자(Man)는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0.013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고용자 증가에 따라 재무성과가 좋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산(LnAsset)의 경우는 총자산회전률(Sale\_Asset)에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0.925으로 확인됐다. 기업연령의 경우 총자산회전률(Sale\_Asset)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0.073으로 확인됐다.

한편, <표 7>과 같이 전문인력지원금의 경우(ln G\_S)의 경우 총자산회전률(Sale\_Asset)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LnAsset)의 경우는 총자산회전률(Sale\_Asset)에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0.824으로 확인됐다. 총고용자는 총자산회전률(Sale\_Asset)에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0.006로 확인됐다.

아래 <표 8>과 같이 사업개발비지원금의 경우(ln G\_R)의 경우 총자산회전률(Sale\_Asset)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LnAsset)의 경우는 총자산회전률(Sale\_Asset)에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0.710으로 확인됐다. 총고용자는 총자산회전률(Sale\_Asset)에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0.013으로 확인됐다.

한편, 아래 <표 8>과 같이 사회보험료지원금의 경우(ln G\_I)의 경우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0.310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지원금은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일 일부지원 해주는 정부지원금이다. 사회보험료지원금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일자리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고용인원 증가 효과에 따른 매출규모 확대에서 그 이유를 예상할 수 있다.

<표 8> 사업개발비 정부지원금(lnG\_R) 및 사회보험료 정부지원금(lnG\_I) 수령 기업의 분석 결과

| 종속변수<br>SeSTA(총자산회전률) | lnG_R           |        | ln_G_I          |        |
|-----------------------|-----------------|--------|-----------------|--------|
|                       | 회귀계수( $\beta$ ) | t값     | 회귀계수( $\beta$ ) | t값     |
| 관심변수                  | -0.206          | -1.536 | 0.310***        | 3.245  |
| lnAsset               | -0.710***       | -7.123 | -0.780***       | -7.694 |
| Age                   | 0.005           | 0.195  | 0.005           | 0.260  |
| Current               | -0.020          | 0.354  | -0.032          | -1.183 |
| Man                   | 0.013***        | 5.040  | 0.004**         | 2.310  |
| Adj R <sup>2</sup>    | 0.326           |        | 0.383           |        |
| Prob>F                | 16.604***       |        | 16.300***       |        |

lnG\_R : 사업개발비 지원금 수령금액의 로그값

lnG\_I :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금액의 로그값

lnAsset : 총자산의 로그값

Age : 기업운영기간

Curren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Man : 고용인원

\*\*\*는 1%, \*\*는 5%, \*는 10% 수준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 운영에 있어 절감 된 비용을 통해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매출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LnAsset)의 경우는 총자산회전률(Sale\_Asset)에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0.780으로 확인됐다. 총고용자는 총자산회전률(Sale\_Asset)에 (+)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0.004로 확인됐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업 중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지원형태별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은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중 근로자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지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지원금의 경우는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나머지 전문인력지원금과 사업개발비지원금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이에 정부지원금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지원금 형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의 효과성에 대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한 <표 9>의 분석결과 일자리지원금(lnG\_P)과 사회보험료지원금(lnG\_I)은 총자산회전률(SeSTA)에 양(+ )의 관계를 나타냈다.

<표 9> 유형별 정부지원금 전부 수령 기업 분석 결과

| 종속변수 : SeSTA<br>(총자산회전률) | lnG_P, lnG_S, lnG_R, lnG_I |        |
|--------------------------|----------------------------|--------|
|                          | 회귀계수( $\beta$ )            | t값     |
| lnG_P                    | 0.873***                   | 2.885  |
| lnG_S                    | -0.021                     | -0.079 |
| lnG_R                    | -0.633**                   | -2.532 |
| lnG_I                    | 0.568*                     | 1.960  |
| lnAsset                  | -1.147***                  | -4.257 |
| Age                      | 0.015                      | 0.293  |
| Current                  | -0.004                     | -0.105 |
| Man                      | -0.001                     | -0.147 |
| Adj R <sup>2</sup>       | 0.406                      |        |
| Prob>F                   | 3.900***                   |        |

lnG\_P : 일자리 지원금 수령금액의 로그값

lnG\_S : 전문인력 지원금 수령금액의 로그값

lnG\_R : 사업개발비 지원금 수령금액의 로그값

lnG\_I :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금액의 로그값

lnAsset : 총자산의 로그값

Age : 기업운영기간

Curren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Man : 고용인원

\*\*\*는 1%, \*\*는 5%, \*는 10% 수준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사업개발비지원금의 경우(lnG\_R)의 경우 총자산회전률(SeSTA)에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모든 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의 경우 일자리 지원금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사업개발비 지원금의 경우는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 결과 일자리지원금과 사회보험료지원금은 앞서 분석한 것처럼 정부지원금별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체 기업 표본 중 모든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34개소에 불과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더 많은 분석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를 통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정부지원금의 효과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2016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무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지원금의 경우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연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전문인력지원금은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개발비지원금은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일자리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연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정부지원금이 기업경영성과에 어떠한 효과성을 보이는 지 확인했다. 분석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초기 단계 인력운영의 지원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증지원제도 상에서는 지원기간 종료 이후 인력운영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원기관 종료 이후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부지원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을 추진한 선행연구가 보여주지 못한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 운영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것에 그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자료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향후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경이 · 이상원. 2009. “회생절차를 종결한 기업의 회계적 성과에 관한 실증분”, 회계연구 제14권 제1호 : 325-357.
- 고용노동부. 2007. 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2015. 20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
- 곽선화. 2009.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연구 제2권 제1호 : 37-65.
- 김보라. 2015.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 의존성향이 재무적성과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성환 · 유옥광 · 김미나. 2010. “정부보조금이 중국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 373-395.
- 김순양. 2008.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1호 : 31-59.
- 김재홍 · 이재기. 2012.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고용창출효과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3호 : 135-163.
- 신상훈 · 박정희. 2008.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패널분석”.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제32권 제1호 : 45-64.
- 윤경옥 · 손희정 · 오웅락. 2018.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및 정부지원금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 89-110.
- 이승규 · 라준영. 2010.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 사회투자수익률(SROI)”. 벤처경영연구 제13권 제3호 : 41-5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년도 사회적기업 안내(201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가이드북(201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보고서(2012, 2013, 201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http://www.socialenterprise.or.kr).
- 허만형 · 양광석. 2015.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연구 제24권 제3호.
- Alter, K. 2007. Social enterprise typology. Retrieve from [https://www.globalcube.net/clients/philippson/content/medias/download/SE\\_typology.pdf](https://www.globalcube.net/clients/philippson/content/medias/download/SE_typology.pdf).
- Alexeev, Michael V. and Kim, Sunghwan. 2008. The Soft Budget Constraint and the Korean Financial Crisi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68(1) : 178-193.
- Cornelius, N., Todres, M., Janjuha - Jivraj, S., Woods, A. & Wallace, J. 200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social enterprise. *Journal of Business Ethics*. 81 : 355-370.
- Flath, D. and Knoeber, C. 1980. Taxes, Failure Costs, and Optimal Industry Capital Structure :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Finance*. 35 : 99-117.

## The Financial Effect of Government Grant on Social Enterprise

Kim Young Kyu\* · Kim Jong Il\*\*

— <Abstract> —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 government subsidy on the performance of the corpo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pport project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the general enterprise.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 government subsidies on financial performance analysis shows that job subsidies show positive (+) relationship with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the financial support for professional manpower and business development. Social insurance premiums showed positive (+) relationship with financial performance.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employment subsidy and the social insurance subsid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 government support typ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subsidies provided by social enterprise have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ubsidy of social enterprise suggests the direction of future government policy to support sustainable growth.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kind of the government subsidy received by the social enterprise. This suggests implications for considering effective ways of linking government funding to the situation of social enterprise.

Thu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grants on financial performance, which had previously been difficult to confirm, and provided a basis for future policy implications.

However, the data limited to the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social enterprise management disclosure remains a limitation of this study.

<Key words> socialenterprise, government grant, financial effect

---

\* Master, School of Busine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yu8209@naver.com,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jayk@catholic.ac.kr, Corresponding Author